

2024.6.12.(수) 10:30

제3차 행정복지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

의안번호	의안명
2700	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복희

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

1. 제안이유

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관련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4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 기준을 “30만원”에서 “45만원”으로 정비함(안 제4조제1항).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으로 인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검토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